

##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28일

전라북도지사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행된 행정명령 2022-300호(2022. 2. 18.)를 아래와 같이 변경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·업종 : 불임

나. 처분기간 : 2022년 2월 19일 0시 ~ 3월 13일 24시(약 3주간)

다. 변경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(붙임 참고)

라. 변경이유
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도 조정 관련 행정명령 변경 시행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, 제4항
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

2. 이 처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
대상자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		50만 원	100만 원	
방역지침 위반	시설·장소의 관리자·운영자	50만 원	100만 원	200만 원
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

3. 또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.
4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□ 주요변경내용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접종증명 음성확인제 (방역패스)	▶ 방역패스(청소년 포함) 의무적용 시설 <b>11종 해제</b> -유흥시설 등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?경정?경 마장/카지노(내국인), 식당?카페, 멀티방, PC방,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, 파티룸, 마사지업소?안마소
모임행사	▶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※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▶ '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'토록하는 제한 해제 -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▶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.5배까지 가능
구분	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
공통	▶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▶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
결혼식장	▶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(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)
장례식장, 돌잔치	▶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	▶ '음식섭취 금지' 해제(고척스카이돔 제외)
실외체육시설	▶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까지 가능
국제회의?학술행사	▶ '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(띄어 앉기 등)' 해제
종교시설	▶ 정규종교활동(소모임?성가대 포함)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※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※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

□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(따로붙임)

# 참 고

# 문의처 (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)

\*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

연번	조치분야	부서	담당자	연락처	
1	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	보건복지부 (생활방역팀)	1339, 044-202-1721~9		
2	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(상황실운영)	사회재난과 (사회재난대응팀)	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	063-280-3823 063-280-3796 063-280-3822	
3	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(방역대책)	감염병관리과 (감염병정책팀)	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	063-280-4693 063-280-2431	
4	클럽 등 유흥주점,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건강증진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	063-280-2456 063-280-2440 063-280-2446	
5	요양시설	노인복지과 (노인시설안전팀)	주무관 강란희	063-280-2461	
	요양병원	보건의료과 (의약응급의료팀)	주무관 정고은	063-280-4689	
	정신의료기관	건강증진과 (정신건강팀)	주무관 이세라	063-280-4690	
6	노래연습장(노래뮤비방 포함)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영화관	문화예술과 (문화콘텐츠팀)	주무관 노연우	063-280-3386	
7	학원, 독서실, 교습소	(주관)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	주무관 이주희	063-239-3442	
		(협조) 자치행정과 (행정팀)	주무관 이태경	063-280-2947	
8	실내·외체육시설, 겨울 스포츠 시설	체육정책과 (체육시설관리팀)	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	063-280-2542 063-280-2543	
9	숙박시설	농어촌숙박시설 (농어촌정비법)	농촌활력과 (농식품6차산업팀)	주무관 정신성	063-280-4195
		숙박시설 (관광진흥법)	관광총괄과 (마이스산업팀)	주무관 오진웅	063-280-2704
		숙박업소 (공중위생관리법)	건강증진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조공린	063-280-4673

연번	조치분야	부서	담당자	연락처
10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경제정책관 (소상공인팀)	주무관 문혜숙	063-280-3256
11	백화점·대형마트, 상점·마트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이상)		주무관 김강준	063-280-3257
12	놀이공원·워터파크(물놀이형 유원시설)	관광총괄과 (토탈관광팀)	주무관 채범진	063-280-3301
13	공연장	문화예술과 (도서관문화시설팀)	주무관 소병훈	063-280-3387
14	결혼식장	여성청소년과 (여성권익팀)	주무관 김진화	063-280-2524
15	목욕장업, 이미용업	건강증진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조공린	063-280-4673
16	장례식장	노인복지과 (노인복지팀)	주무관 장경애	063-280-2513
17	관광명소	관광총괄과 (관광자원개발팀)	주무관 조영주	063-280-3332
18	종교시설	문화유산과 (종무팀)	주무관 강승주	063-280-3308
19	어린이집	사회복지과 (보육정책팀)	주무관 장힘찬	063-280-4762